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한  
장애인등록사항 자료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73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검토의견 ..... | 3 |



## I. 개요

### 1.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733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주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11.

(3) 회 부 일 : 2026. 2. 12.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소통 및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기관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

이 조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를 신속히 확인하고 장애인의 형사·  
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42  
조제1항 신설 등).

## Ⅱ.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42조제1항 신설 등).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13조의2(발달장애인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①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권리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

| 현행                                     | 개정안                                                                                                                                                                                                                                                                                                                                                                                                                                    |
|----------------------------------------|----------------------------------------------------------------------------------------------------------------------------------------------------------------------------------------------------------------------------------------------------------------------------------------------------------------------------------------------------------------------------------------------------------------------------------------|
| <p>제42조(벌칙) &lt;신설&gt;</p> <p>(생략)</p> | <p>따라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한 발달장애인의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전 동意的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내용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2조(벌칙) ①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

##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12조<sup>1)</sup> 및 제13조<sup>2)</sup>에서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조인으로 하거나 동석하게 하여야 하고,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발달장애인 수용자 127명<sup>3)</sup>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따르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은 인원은 27명(21.3%)에 그쳤으며, 다수는 신뢰관계인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 발달장애인의 경우, 수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이해하거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진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3) 전국교정청 산하 수용시설에 기결·미결수 포함하여, 총 262명의 발달장애인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중 127명을 면담함.

4) 국가인권위원회. (2025. 12. 1.).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미보장 등 차별 직권조사(24직권0001000 결정)」.

술의 정확성·자발성이 저하되거나 자기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인 여부가 확인되어 신뢰관계인 동석 등 현행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보호장치가 작동된다면,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과 형사·사법 절차상 차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임.

-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력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사전동의의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권 행사와 직접 연관되는 사항으로,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 관련 개별 법령(형사사

법절차 또는 경찰청 소관 법령)에서 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와 범위 등 (주체·요건·절차)을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가족관계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건강보험자료, 장애인등록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제도의 집행 주체인 교육부장관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접 근거를 두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응답의무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7조(자료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재산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고등교육기관
4. 금융회사등(은행연합회를 포함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무원연금법」**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연금취급기관의 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50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급여의 환수, 학자금 대여 등 공무원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둘째, 개정안은 ‘사건관계인’의 조력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해 장애인등록사항 등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관계인’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수사기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거나 과도하게 확장되어 과잉 조회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건관계인’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특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사건관계인’은 법률에서 그 의미를 일반적으로 정의해 두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개별 규정의 문맥에 따라 포괄적으로 사용되거나(「형사소송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에서 ‘고소인·고발인·참고인·피해자’ 또는 ‘피의자·피조사자·피해자·참고인’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정의·운용하는 사례가 있음.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⑤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재판기록을 말한다.

② "사건관계인"이란 형사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1.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피해자

2. 증인, 배상신청인, 감정인

3. 1, 2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

###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사사건등"이란 경찰이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사건을 말한다.

2. "사건관계인"이란 피의자, 피조사자, 피해자, 참고인 및 그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말한다.

□ 셋째, 개정안은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등에게 누설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그 적절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자료·비밀 등을 목적 외로 사용·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 비밀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보건복지부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제32조제6항에 따른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 제32조의5제1항·제32조의6제3항·제5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한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실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망 및 접근권한·기록관리·보안조치 등 전산시스템 정비 및 사전동의 방법·절차 및 제공 정보 범위 등을 정하는 하위 법령 제정이 요구되므로,

시행일을 연기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가. 보건복지부

- (정보제공) 형사·사법절차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요청기관(경찰청) 소관 개별 법령에 정보요청 법적 근거 마련 우선적으로 필요함.
- (사전동의) 장애인 등록 당시에 받은 사전 정보동의는 포괄적 동의에 해당하므로, 수사 시점에 수사목적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함.
  - 사전동의 방법과 절차, 정보 범위 등 하위법령(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수사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02 |